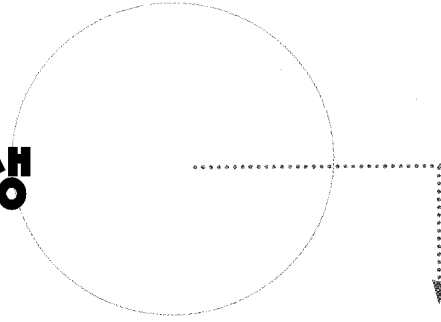


# 구제역 발생



## 1. 질병발생 신고 및 검사상황

신고상황 (4. 12 현재)

총신고상황 : 54건 (양성12, 음성41, 검사중1)

신고내용 검사결과(4. 12 현재)

양성 : 12건

신고 일자	판정 일자	발생지역	축종/ 발생두수	비고
3.25	3.26	경기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유우 / 15두	
3.31	4.01	충남 홍성군 구항면 장양리	한우 / 13두	2농가
4.02	4.04	충남 홍성군 갈산면 오두리	한우 / 1	
		충남 홍성군 구항면 내현리	한우 / 20두	
		경기 화성군 비봉면 쌍학리	유우 / 4두	
4.03	4.04	충남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한우 / 10두	
		충남 홍성군 구항면 장양리	한우 / 1두	
4.07	4.09	충남 홍성군 구항면 장양리	한우 / 1두	
4.08	4.10	경기 용인시 남사면 방아리	한우 / 4두	
	4.10	충남 홍성군 구항면 장양리	한우 / 20두	
4.10	4.11	충북 충주시 신니면 마수리	한우 / 6두	

음성 : 41건

## 2. 주요 조치사항

전국가축시장 폐쇄 조치 및 가자재소독 철저 지시(4.5)

이동제한조치 이전에 홍성지역에서 서울(97두) 및 인천(360여두) 도매시장에 출하된 돼지 전량 음성확인으로 정부수매 조치 (4.5)  
수의과학검역원의 항체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됨

도축 부산물 폐기방법 및 보상기준 통보(4.5)  
도축부산물은 지자체의 공유지 또는 지역 조합 소유 초지 및 출하 농가의 농장에 매몰 또는 단미사료(렌더링)가공 등으로 폐기

정부가 수매한 가축 부산물의 매몰, 소각에 소요되는 실비 지급

《 매몰·소각에 소요되는 비용은 마리당 1만원 이내에서 지원

경기·충남에 수의사 동원지시 (4.5)

동원목적 : 신속한 가축 예방접종

동원대상 : 공·개업수의사 및 생산자단체 등의 소속 수의사

이동제한지역내 가축방역관 부족에 따른 보완 조치 (4.5)

이동제한지역내 가축의 지정도축장 출하시 공·  
개업수의사, 양돈공동 방역사업단, 지역축협등의  
소속 수의사도 출하승인서 발급 가능

**발생지역 인근 농가소독 및 예방접종 철저 지시**  
(4.5)

소규모 축산농가를 우선 소독하고, 가축사육  
밀집지역 및 다두사육농가 우선 예방접종실시

**일본산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의 수입위생  
조건 폐지**  
(4.5)

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의 일본 구제역 발생  
확인에 따른 조치

**이동제한 및 예방접종가축 사후관리방안시달**  
(4. 10)

구제역 발생지역 이동제한 조치 조정건의,  
예방접종가축의 사후 관리방안, 예방약의  
안전성등에 대한 설명자료 시달

**국세청의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세제 및 세정  
지원 내역 통보**  
(4. 10)

직접피해 : 신고 납부기한을 2~6개월까지 연장,  
체납된 세금도 6~9개월 징수 유예  
간접피해 : 개별신청을 받아 납기연장 및 징수  
유예 가능 등

**정부지원 구제역 방역용 생석회 시도별 배정통보**  
(4. 10)

1단계 배정 : 4,854톤(경기 1,904, 인천 100,  
충남 1,860, 전북 990)

생석회 공급 : (전일까지) 639톤 (금일) 590톤  
(누계) 1,229톤

**“예방접종가축, 강제 살처분·도축 않는다”는  
내용 홍보**  
(4. 10)

보도자료 배포 및 농가홍보 리후렛 문안 배포(시·도)

**구제역 방역요원 추가 협조 요청**  
(4. 10)

경찰청에 안성지역 방역요원 120명 지원 협조 요청

**일본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  
조건 폐지(농림부 고시 제2000-26호, 4. 10)**

**충남도의 도축 지육 이동건이에 대한 검토회신**  
(4. 10)

이동제한 출하가축의 도축처리후 PH 검사장소  
조정 (도축장→가공장)

**농림부차관 및 차관보 구제역 현장 대책협의회  
주재**  
(4. 10)

차 관 : 용인시지역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협의  
차관보 : 한남중부공장 회의실에서 관계기관,  
양축가대표 협의

《 논산, 공주, 아산, 연기군에서 지육상태로 한남  
중부공장 반입 합의

**법인 양돈협회 대표자 간담회 (4. 10. 축산국장)**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 상황설명 및 협조당부

**YMCA 시민중계실 토론회 참석**

(4. 10. 축산정책과장)

구제역 방역 대책 추진 상황 설명 등

※ 구제역 발생지역 이동제한 및 예방접종 설명(농림부 사표)

1. 이동제한지역(발생농장 반경 20km)을 조정하여 달라는 건의에 대하여

- ① 현행 구제역 발생농장 반경 10km지역(오염지역)과 발생농장 반경 10~20km지역(경계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추가발생이 없는 한 “해외악성가축전염병방역실시요령(농림부훈령)”에 의거 최초 발생일부터 3주 이상이 경과 후 단계적으로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참고로 “오염지역”이라는 표기는 해당지역 가축이 전부 오염된 것으로 오해하는 문제가 있어 잠정적으로 “보호지역”이라는 용어로 사용키로 하고, 향후 훈령 개정시 반영할 계획임.
- ② 이동제한지역과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구제역의 조기종식과 확산방지를 위해 가축·차량 등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이며, 지역의 범위는 국제기준과 구제역 비발생국인 우리나라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제정하였던 것임.
- ③ 이동제한지역내 농가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동제한지역의 범위와 제한기간을 축소·조정하기 위해서는 “구제역 역학조사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방역관리상 구제역 확산위험이 없다는 전제하에 “해외악성가축전염병방역실시요령”의 개정절차를 거쳐야 함.
- ④ 현재 경계지역(10~20km)은 보호지역(10km이내)과 달리 예방주사 미접종, 도축처리후 경계지역내 지육유통 허용, 이동제한지역밖 도축장과 육가공장 지정 도축 허용, 사료차량의 세척·소독후 통행허용 등 완화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⑤ 이러한 이동제한지역내 방역통제사항을 보호지역까지 포함하여 전면적으로 완화할 경우 구제역 방역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에서 가축이동제한에 따라 해당지역을 우선적으로 수매해 주고 있는 목적도 상실됨. 특히 10km이내의 보호구역의 축소문제는 방역관리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할 때 구제역 방역을 불가능하게 함.

2. 구제역 예방접종을 한 가축의 사후관리 문제제기에 대하여

- ① 현재 10km내 소, 돼지 등 예방접종한 가축도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다른 가축과 같이 지정도축장에서 도축을 허용하고 있음.
- ② 예방접종을 한 가축에 대해 “전체를 살처분 한다”, “6개월이내에 강제 수매하여 도축장에 출하하여야 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및 소문은 사실과 다름.
- ③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목적은 예방주사를 맞은 가축이 구제역에 걸리지 않게 함으로써 구제역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농가의 손해를 최소화하여 우리나라 축산업의 기반을 유지하는 데 있음.
- ④ 예방접종 가축의 사후관리 문제는 구제역이 타지역으로 확산되지 않고 현상태에서 진정되느냐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며, 국제사회에서 구제역의 조기 청정화 인정과 국내축산업 이해득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임.
- ⑤ 따라서 구제역은 전염속도가 어느 다른 질병보다 빠르므로 초기에 예방접종을하여 확산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농가가 정부 방역에 협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예방접종한 가축을 초기에 도축장으로 출하하여 도축한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농가의 도태보상이나 경영안정지원 등이 충분히 이루어 질 것임.

3. 구제역 예방약의 안전성에 대하여

- 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제역 예방약은 구제역 병원체를 불활화(不活化)시켜 만든 사독(死毒)예방약(O type)이기 때문에 생균(生菌)으로 만든 부루세라 예방약과는 달리 부작용은 없음.
- ② 상기 예방약은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생산한 수입완제품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인정을 받은 제품임(과거 부루세라예방약은 국내에서 생산한 것임)

### 3. 구제역 발생지역 조치사항

#### 살처분 실적 (4. 10.21:30 현재)

경기 파주 : 6농가 106두  
 경기 화성 : 1농가 30두  
 경기 용인 : 2농가 81두  
 충남 보령 : 1농가 55두  
 충남 홍성 : 40농가 594두  
 계 : 50농가 866두 (한우676두, 젓소153, 돼지16두, 기타21)

### 4. 공 통

반경 20km내 모든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 및 10km이내 예방접종, 혈청 검사, 소독 실시

#### 예방접종 실적

《 파주 : 663농가 93,895두 (접종완료)  
 《 화성 : (금일) 67농가 2,483두(누계) 340농가 9,560두  
 《 홍성 : (금일) 303농가 12,656두(누계) 3,771농가 85,936두  
 《 보령 : (금일) 495농가 2,665두 (누계) 1,476농가 8,610두  
 계 : (금일) 865농가 17,804두 (누계) 6,250농가 198,001두

### 5. 향후 추진계획

경기·충남지역 소독장비 동원지시

농림부 구제역대책 상황실 확대 개편  
 비상계획관실, 농·축협 관계자등 포함

가축 소독약 공급확대  
 농협중앙회를 통해 소독용 생석회 추가 확보 등

전국 농대학장 간담회 개최(4.8, 농림부 대회의실)

구제역 방역요령 및 육류 소비촉진 홍보(계속)

### 6. 타부처·관련 기관 및 단체 추진 상황

행자부 등 각 부처, 시·도
-----------------

중앙 및 지자체 공직자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지속실시

※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전단 배포 및 시식회 등

서울 : 서초구 축산농가(16농가 579두) 특별방역 실시

부산 : 구제역 방역 및 특산물 소비촉진 홍보 (반상회보 게재 의뢰)

대구 : 홍보리후렛 1천부 제작 배포

광주 : 홍보물 배부 (1천부)

대전 : 구제역 관련 홍보물 배포 45,000부 (한발소식지)

울산 : 389농가 방역소독지원, 팜프렛 제작 배포(50천부)

경기 : 소독약품공급(25천ℓ)

강원 : 소독약품 공급 등

## 구제역의 병인체바이러스

### 병인체

구제역 바이러스는 미생물 분류학적 Picornaviridae과 Aphthovirus속에 속한다.

구제역바이러스의 혈청형에는 A, O, C, SAT-1, SAT-2, SAT-3 그리고 Asia-1 등 7가지의 주요 혈청형이 있으며 80여가지의 아형이 알려져 있다. 어떤 특정형에 대한 면역형성이 다른 형에 대한 교차면역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백신제조 및 접종 등에 있어서의 스트레인 선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 바이러스 형태

구제역바이러스는 엔테로바이러스에 속하는 소형의 RNA 바이러스이다. 형태학적으로는 20면체를 나타내며, 직경은 23~25nm이다. 분자량은  $8.9 \times 10^6$ 달톤이다. 좁은 pH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pH 0.5이상의 알칼리성에서는 급격히 파괴된다. 4°C 이하에서는 단순배지 내에서도 수년간 보존이 가능하며 37°C에서는 10일 정도 생존이 가능하다. 56°C 30분에서 대부분의 스트레인이 파괴되지만 조직배양 또는 응용배지내에서 어떤 스트레인은 80°C에서도 수 시간 동안 생존 가능한 것도 있다.

### 병인론

구제역 바이러스는 동물의 기도로부터 증식되며 배출될 수 있다. 바이러스의 공기 중 배출은 감염의 급성기 중에 일어난다. 돼지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지만 반추동물에서는 회복기 중에도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으며 또는 면역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감염에 노출된 이 후에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소에서 2년간 아프리카 물소에서 5년간 그리고 양과 염소에서 수개월간 인두 내에 생존할 수 있다. 가축화 된 아시아 물소는 수개월간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

## 구제역의 임상증상과 진단

### 임상증상

구제역 바이러스에 의한 감수성 동물에의 감염은 전형적인 증례에 있어서는 발굽, 구강점막, 젖꼭지와 유선 등에 수포성 병변이 생긴다. 수포는 비공과 사지등 기타 다른 부위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돼지에서 그러하다. 임상적 소견은 경증으로부터 심증까지 다양하다. 임상소견의 심한 정도는 바이러스 스트레인, 노출정도, 동물의 나이와 축종, 품종 그리고 면역정도 등에 따라 다양하다.

### 폐사율

병소성 심근염에 의한 폐사율은 극히 통상적으로 어린동물에서 나타나게 되지만 근염은 기타 다른 부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소에서의 폐사율은 평균 5% 이내로 그리높지 않으나 생산성 저하가 뚜렷하다. 새끼돼지에서의 폐사율은 50%정도이며 나이 먹은 동물도 때때로 폐사되기도 한다.

### 진단

수포성 질병의 기왕력을 가진 동물에 있어서는 수포액, 상피조직, 유즙 또는 혈액 표본재료로부터 구제역 바이러스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하다.

진단은 또한 폐사 예의 혈액, 심장 또는 기타 장기로부터 구제역 바이러스를 분리해 냄으로서도 내려질 수 있다.

심근염은 폐사 예의 경우 육안적으로 볼 수 있다.

### 발견시 신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근거로 하여 해외약성 가축전염병 방역실시 요령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구제역 등 해외약성가축전염병으로 의심되는 증례가 발견된 경우에는 동 요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외약성가축전염병의 병인체의 취급이나 진단을 위하여는 “고도안전 차폐연구실” 등 특수시설이 필요하며 반드시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의심 축이 발견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다.

신고는 농림부(축산국 가축위생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해외전염병과) 또는 각 시도 가축위생시험기관(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시험소, 농축산사업소 등)으로 하면 된다.

## 구제역에 대한 예방대책

### 수입 금지

구제역이 잠입방지를 위하여는 구제역 발생국가로

부터 우제류 동물이나 그 생산물의 수입을 철저히 금지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한 사항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도 무역마찰의 소지가 될 수 없으며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 예방대책

구제역의 예방을 위하여는 여러 가지 형태의 불활화 바이러스 백신이 상품화 되어 있으나 함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동안 구제역 비발생 상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구제역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예방접종 프로그램 보다는 살처분 정책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구제역 백신과 진단액의 수입이나 사용은 물론, 발생우려 국가로부터의 우제류 생축의 수입은 철저히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철저한 검역절차는 질병의 잠입을 차단하며 엄격한 감시활동은 대한민국을 이러한 고위험도 질병의 비발생국임을 보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 예방접종

바이러스를 세포배양에 감염시키고 결과산물을 정화한 다음 에틸렌아미민으로 불활화시킨 것을 어주반트와 혼합하는 것이다.

여러 구제역 백신들은 주어진 야외상황에 있어서 관련될 수 있는 여러가지 혈청형들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다가로 혼합되어 있다. 면역성에 있어서 만족스런 수준을 확보

하기 위하여 2내지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는 기본과정과 4내지 12개월마다 재접종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구제역 백신의 유효기간은 4℃에서 1년이면 동결보관 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제동물위생규약의 구제역 관련규정**

국제동물위생규약은 동물 및 동물성 식품의 국제교역과 관련된 중앙정부 수의기관 및 각 정부수의기관이 지켜야할 법적, 윤리적 및 도덕적 의무사항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질병별 품목별 교역조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구제역과 관련하여는 비발생국의 조건, 발생국 또는 비발생국으로부터 우제류 동물이나 그 생산물을 수입할 때 수출국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위생조건 등을 규약 제 2.1.1장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원 문 〉

When FMD occurs in an FMD free country or zone where vaccination is not practised, the following waiting periods are required to regain the disease free status:

- a) 3 months after the last case, where stamping-out and serological surveillance are applied; or
- b) 3 months after the slaughter of the last vaccinated animal where stamping-out, serological surveillance and emergency vaccination are applied.

**비발생국가에서의 발생**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비발생지대 또는 비발생국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경우 「질병비발생」상태로 환원되기 위하여는 아래의 기간이 요구된다 :

살처분 정책(Stamping-out policy)과 혈청학적 예찰(Serological Surveillance)이 실시될 경우에는 최종 발생 후 3개월, 혹은 긴급백신을 한 경우에 백신을 한 동물의 살처분 후 3개월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비발생국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인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면 「질병비발생」상태로 환원되기 위하여는 효과적인 예찰이 실시되는 경우 아래의 기간이 요구된다.

- a) 살처분 정책이 실시될 경우에는 최종 발생후 12개월
- b) 살처분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최종 발생후 2년

앞에서 언급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구제역비발생국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기적이고 신속한 질병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하며 최소한 12개월간 예방접종이 실시되지 않았으며 구제역에 대하여 효과적인 예찰시스템이 운영되고 구제역에 대한 예방과 방역을 위한 모든 규제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예방접종 중단후 구제역 예방접종된 동물을 수입하지 않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비발생인 국가만을 인정하고 있다.

규약은 다음 품목이 수입시에 구제역에 대한 위험여부를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여 구제역 발생시 관련품목의 수출입이 영향을 받게 된다.

반추수와 돼지, 정액, 수정란, 고기 및 육제품, 사료용 공업용 동물성 산품, 제약용 동물성 산품 및 멸균되지 않은 생물학적 제제가 포함된다.

### 구제역 소독요령

#### 농장출입구 통제, 세척 및 소독

가축방역관은 발생농장내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고 사람 및 차량의 출입을 통제한다. 소독조, 샤워실 및 소독실 등의 기본적인 소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발생지를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작업자 포함) : 발생지에서 사용한 피복, 장화, 기타 소지품 등은 깨끗이 세척후 2% 가성소다 등의 소독수통에 10분정도 담구고, 탈의한 사람은 비누와 샴푸를 사용하여 온몸을 깨끗이 씻는다.

발생지를 벗어난 사람은 상부의 통제하에 일정기간 동안 (7일간) 타 농장방문이나 감수성 동물과의 접촉을 일체 금지한다.

반출차량은 물, 비누, 세정제 등으로 차량외부를 철저히 세척하여 발생지내에서 묻은 이물질은 깨끗이 제거한 후 소독을 실시한다.

특히 타이어, 차량 밑바닥, 작업자나 운전자의 신체와 접촉이 빈번한 핸들, 의자, 차량내부바닥 등 오염가능성이 높은 부위에 대해 소독을

철저히 한다. 차량 내부는 소독수를 묻힌 걸레 등을 이용하는 게 좋다.

소독은 발생지역안의 출입구에서 실시하며, 단 세척 및 소독으로 인한 물이 발생지 이외의 지역으로 흐르지 않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생지내 가까운 곳에 구덩이를 파서 누출을 방지한다.

#### 소독 프로그램

사전점검 → 발생지 예비소독 → 세척 → 1차 소독 → 1차 검사 → 재소독 → 최종검사

#### 세척

세척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수도나 배수관을 막아 세척수가 발생지 이외의 지역으로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조치한다.

필요하다면 굴착기로 구덩이를 파서 세척하는 동안 세척수의 외부누출을 방지하고 소독완료후 흙을 덮은 것도 좋다.

소독이 완료된 축사는 폐쇄시키고 경고판을 부착한다.

매물 위치는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침출수가 유출되거나 악취가 나는지 확인한다.

정화조, 하수구 및 배수구를 세척하고 소독한다.



## 수포성질병 방역관련, 소독약 제제중류

소독 대상물	소 독 약 제 제
동물사체	알칼리제제 : 가성소다 (sodium hydroxide) 탄산나트륨 (calcium carbonate anhydrous) (calcium carbonate washing soda) 산 제제 : hydrochloric acid 구연산 (citric acid)
축사, 기자재	산화제제 : 차아염소산 나트륨 (sodium hypochlorite) 차아염소산 칼슘염 (calcium hypochlorite) 생석회 알칼리제제 : 가성소다 (sodium hydroxide) 탄산나트륨 (calcium carbonate anhydrous) (calcium carbonate washing soda)
사 람	비누 및 세제, 산 제제 : 구연산(citric acid)
물 탱 크	알칼리제제 : 가성소다 (sodium hydroxide) 탄산나트륨 (calcium carbonate anhydrous) (calcium carbonate washing soda)
축산분뇨	산 제제 : hydrochloric acid, 구연산(citric acid)
주 택	산화제제 : 차아염소산 나트륨 (sodium hypochlorite) 차아염소산 칼슘염 (calcium hypochlorite) 산 제제 : 구연산 (citric acid)
기계류 수송차량 등	알칼리제제 : 가성소다 (sodium hydroxide) 탄산나트륨 (calcium carbonate anhydrous) (calcium carbonate washing soda) 산 제제 : hydrochloric acid 구연산 (citric acid)
의 복	산화제제 : 차아염소산 나트륨 (sodium hypochlorite) 차아염소산 칼슘염 (calcium hypochlorite) 알칼리제제 : 가성소다 (sodium hydroxide) 탄산나트륨 (calcium carbonate anhydrous) (calcium carbonate washing soda) 산 제제 : 구연산 (citric acid)
전기용품, 사료	포르말린 가스

### 이동제한지역 방역조치요령

#### 발생농장 및 발생농장 인근 살처분 농장 (발생지역)에 대한 조치

감수성가축(소, 돼지, 양, 사슴)은 전두수 살처분조치(보상대상)

가축의 살처분 이전까지 집유된 원유는 소독·폐기·매몰(보상대상)

사료(건초·볏짚포함) : 남은 사료나 볏짚 등은 소독·소각 또는 매몰(보상대상)

《 사람 음식물쓰레기 : 소독·소각 또는 매몰

분뇨 :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반출 금지

차량 :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진입을 금지하고 마을안에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마을을 통행할 것

사람 : 가축방역관과 해당마을 거주자를 제외

하고는 당해 마을 출입을 금지하고 마을에서 나오는 사람에 대하여는 소독 실시

**발생지역부터 10km이내 지역에 대한 조치**

감수성 가축 전두수 이동제한. 다만, 도축장 출하를 목적으로 이동제한 지역에서 반출되는 가축에 대하여는 지정 도축장에 한하여 도축 허용

《 관할도지사는 해당 도축장을 오염지역 출하가축 도축장으로 지정 조치

《 출하가축운송업자는 시장·군수 또는 권한위임을 받은 가축방역관으로부터 도축장 출하승인서를 교부 받아 운행

원유 : 집유된 원유는 유가공장에서 초고온멸균(UHT방법)처리하여 유통(원유를 가축에 먹이지 않도록 할 것)

사료(건초·볏짚 포함) :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동제한지역(10km지점) 밖으로 반출 금지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동제한지역 밖으로 반출금지

**차량**

《 가축수송·집유차량을 포함한 모든 차량 : 오염지역 밖으로 나올 때 세척·소독 실시후 통행 허용

(다만, 집유차량의 경우 배기구멍은 0.2μ필터 또는 소독약이 적혀진 천으로 막고, 차체 표면의 소독과 매일 집유차량의 탱크로리 내부에 대한 세척·소독 처리)

※ 10km이내 지역의 가축에 급여할 목적의 사료와 소독 약품을 실은 차량은 최소 빈도로 반입을 허용지정 도축장은

10km이내 지역에서 반출된 가축에 한하여 도축을 하고 기타 지역에서 출하된 감수성 가축의 도축금지 조치

**발생지역 반경10~20km 지역에 대한 조치**

감수성 가축 전두수 이동제한. 다만, 도축장 출하를 목적으로 농장에서 반출되는 가축에 대하여는 지정 도축장에 한하여 도축허용

《 충남도지사는 해당 도축장을 경계지역 출하가축 도축장으로 지정 조치

《 출하가축운송업자는 출하가축의 사육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권한위임을 받은 가축방역관으로부터 도축장 출하 승인서를 교부 받아 운행

원유 : 집유된 원유는 유가공장에서 초고온멸균(UHT방법) 처리하여 유통(원유를 가축에 먹이지 않도록 할 것)

사료·분뇨·음식물쓰레기 :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동제한지역(20km지점) 밖으로 반출 금지

**차량**

《 도축장 출하차량 : 경계지역(20km지점) 밖으로 나올 때 소독을 실시 하고 10km 지역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자제

《 기타 가축수송·집유차량을 포함한 모든 차량 : 10km이내의 차량과 같은 조치

※ 20km이내 지역의 가축에 급여할 목적의 사료와 소독약품을 실은 차량은 최소 빈도로 반입을 허용

지정 도축장은 10~20km이내 지역에서 출하된 가축에 한하여 도축을 하고 기타 지역에서 출하된 감수성 가축의 도축금지 조치 